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435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6. 10. 31.
4. 회부일자 : 2016. 11. 03.

II.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운영해 왔으나, 행정자치부에서 2013.12.11.로 현행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III.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의안 별첨
3. 기 타 :
 - 입법예고(2016. 10. 14. ~ 10. 24.)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35호로 제출되어 2016년 11월 0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임용조건 등의 인사사항이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법령의 통일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연혁과 법령 체계에 대한 검토

- 「지방공무원법」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제2조제3항제2호에서 별정직공무원을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등의 사항(이하 ‘인사사항’이라 함)에 대해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를 제정하여, 동 조례 제4조 및 [별표1]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따라 속기록 담당, 예비군 중대장 및 학생수련담당 등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가 2012년 12월 11일 개정되면서 별정직공무원을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게 되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2013년 12월 11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사항에 대한 공

1) 2012년 12월 11일 개정 전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 ②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 나. (생략)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 4.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통적인 법령체계가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 제·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후속조치로 2013년 12월 12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예규)을 개정하였으며 동 지침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비서관·비서, 시·도 정무부시장·부지사, 의회전문위원, 국제관계대사 등으로 한정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였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사항이 이처럼 상위법령에 통합 규정되었는바, 법령의 체계적합성 측면에서 동 조례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나. 조례 폐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앞서 살핀 것처럼 2012년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현행 조례상의 별정직공무원 규정은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상황이고,

또한 현행 조례 제1조부터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개정된 상위법령이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²⁾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사항에 대해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사항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조례는 실효(失效)된 것으로 봐야할 것인바, 개정보다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적합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상위법령이 제·개정된 지 3년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그동안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 및 폐지를 지연하였다는 것은 소관 사무 처리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한 것이라 하겠는바,

향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법적 공백상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붙임] 참고.

[붙임]

지방별정직공무원 관련 상위법령과 현행 조례 조항별 비교

구분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안 검토의견
제1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근거하여 별정직 임용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적시	상위법령과 유사	상위법령에 동일내용 포함
제2조	별정직 공무원 임용사항에 대한 규정 적용범위 적시	상위법령과 유사	상위법령에 동일내용 포함
제3조	임용권자의 권한 등 규정	상위법령과 유사	상위법령에 동일내용 포함
제4조	임용 시 자격요건 등 규정	임용자격요건 등 규정, 미규정 시 행자부 기준 준용	상위법령에 동일내용 포함
제5조	외국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절차 일반직공무원 준용 규정 (인사규정 제7조에 포함내용)	상위법령에 동일내용 포함
제6조	별정직공무원 시험관련 규정	응시 및 근무상한연령 등 일반직 준용 규정 (인사규정 제8조에 포함)	상위법령에 동일내용 포함
제7조	임용절차(공고, 방법 등)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 적시	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규정 → 상위법령에 따라 임용하여야 하므로 규정 불필요	해당조문 불필요
제8조	근무상한연령 및 퇴직시기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	상위법령에 동일내용 포함
제9조	근무성적평정 관련 사항 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준용 적시	직권면직 조항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규정 일부 적시로 불필요	상위법령에 동일내용 포함
제10조	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규정 - 휴직 시 결원보충 등	휴직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휴직규정 일부 적시로 불필요	상위법령에 동일내용 포함
제11조	시간제 근무 범위 등 규정	휴직기간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4조 규정 일부 적시로 불필요	상위법령에 동일내용 포함
제12조	면직 관련 규정	휴직의 효력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5조 규정적시로 불필요	상위법령에 동일내용 포함
제13조	징계 등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준용 적시	징계 규정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준용 적시	상위법령에 동일내용 포함
제14조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규정 - 휴직명령, 직권면직 시	시행규정	-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 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 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시행 2014.11.25.] [행정자치부예규 제1호, 2014.11.25., 타법개정]

1. 목적

○ 이 지침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용기준과 방법 및 처리절차 등「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영"이라 함)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구분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비서관·비서, 시·도 정무부시장·부지사, 의회전문위원, 국제관계대사 등